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

제정 2021. 6.10 조례 제2772호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자원순환기본법」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「자원순환기본법」(이하 "법" 이라 하다) 제2조에 따른다.
- 제3조(기본원칙) 광명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, 사업자 및 시민 등은 자원순 황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.
 - 1.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
 - 2.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 해성을 고려할 것
 - 3.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(버려지는 물품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용도를 바꿔 새로운 가치 를 지닌 상품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)할 것
 - 4.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할 것
-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자원순환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방향에 부합되게 하여야 한다.
- 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광명시(이하 "시"라 한다)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·체계적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사업자, 시민,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.
- 제6조(사업자의 책무) 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· 유통·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, 친환경 포장재 사용, 과대포장 억제,

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

-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사업자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다.
- 제7조(시민의 책무) ①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사용·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시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
- 제8조(집행계획 수립) ①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·시 행하여야 한다.
 - 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
 - 2.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
 - 3.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
 - 4.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
 - 5.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
 - 6.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
 - 7. 폐기물의 감량,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
 - 8.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 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
 - 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9조(자원순환 통계조사) ① 시장은 집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·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0조(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)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

- 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.
- 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
- 2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
- 제11조(공공기관 폐기물 감량) 시장은 시청사 및 제1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.
- 제12조(위원회 설치 및 구성) ① 시장은 시의 자원순환 촉진 시책을 심의·자문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촉진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-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, 「양성평 등기본법」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③ 위원회 위원장은 시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 과장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 - 1. 광명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
 - 2. 환경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, 전문가
 - 3.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
 - 4.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의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 -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시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.

광명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

- 제13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자문한다.
 - 1.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
 - 2. 집행계획 수립·변경
 - 3. 시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
 - 4. 폐기물처리를 위한 기술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
 - 5.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, 홍보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14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 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15조(의견청취)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16조(수당 및 여비)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「광명시 각종 위원 회 설치 및 운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17조(교육 및 홍보 등) ① 시장은 시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②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- 제18조(재정적 지원 등) ①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기술적·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.
 - 1. 1회용품 사용억제,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
 - 2.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시민실천사업
 - 3.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

인정하는 사업

② 시장은 폐기물 감량, 재사용·재활용·새활용 촉진,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사업자, 시민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,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.

제1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